

# 연간 휴양시설 임대차 계약서

성동구청(이하 "발주기관"이라 한다)과 (주)여행창조(이하 "계약상대자"라 한다)는 "발주기관"의 연간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하여, "계약상대자"가 공급하는 객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계약목적)** 본 계약은 "발주기관" 소속직원이 이용할 연간 휴양시설의 객실을 "계약상대자"가 공급함에 있어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계약기간 동안 "발주기관"과 "계약상대자"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공급객실)** 본 계약에 따라 "계약상대자"가 "발주기관"에게 공급할 객실은 아래와 같다.

- 경기도 가평군 가화로 1575-16 연인산온천리조트 [79.2㎡(24평형)]  
(이하 "연인산온천리조트"이라 한다.)
- 경기도 양평군 용천로 58 돌체파르니엔펜션 [52.9㎡(16평형)]  
(이하 "돌체파르니엔펜션"이라 한다.)
- 인천 강화군 해안남로2845번길 25 라르고빌 [59.2㎡(17평형)]  
(이하 "라르고빌"이라 한다.)

**제3조(공급기간 및 수량 등)** 본 계약의 객실 공급기간 및 수량 등은 아래 표와 같다.

구분	계약기간	총 숙박수	객실 면적	객실 수량	기준 인원	비고
연인산 온천리조트	2015년 3월 ~ 2016년 2월	52박 ▪매주 토요일(52박)	79.2㎡(24평형) 패밀리스위트	1실	4인	추가 2인까지 가능 (1인당 15,000원)
돌체파르니엔펜션	2015년 3월 ~ 2016년 2월	52박 ▪매주 토요일(52박)	52.9㎡(16평형) B동 1층	1실	4인	
라르고빌	2015년 3월 ~ 2016년 2월	52박 ▪매주 토요일(52박)	59.2㎡(17평형) 패밀리스위트	1실	4인	

제4조(공급가격) 본 계약의 객실 공급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.

구 분	단 가	숙박수	총 액	비 고
연 인 산 온 천 리 조 트	170,000원	52박	8,840,000원	
돌 체 파 르 니 엔 펜 션	185,000원	52박	9,620,000원	
라 르 고 빌	200,000원	52박	10,400,000원	
합 계			28,860,000원	

※부가가치세(VAT) 포함된 가격임.

제5조(대금지급) "발주기관"은 제4조의 총 공급가격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"계약상대자"명의 계좌(국민은행 \*\*\*\*\*(주)여행창조)로 지급한다.

제6조(의무사항) 본 계약에 따라 실시하는 "객실공급"에 대한 "발주기관" 과 "계약상대자"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. "발주기관"은 예약 및 사용자의 변경·취소 등에 “계약상대자”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객실 사용 일주일 전까지 전 객실의 사용자의 이름, 핸드폰 번호를 "계약상대자"에게 제공한다.
2. "계약상대자"는 "발주기관"이 통보한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예약의 확인 및 이용절차 등에 대한 SMS(문자안내) 및 전화안내를 하여 "발주기관"소속 직원의 객실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3. "발주기관"과 "계약상대자"는 사용자의 변경·취소에 최대한 협조하여 객실 사용누락을 방지한다.
4. 공급기간 중 "발주기관" 이용 직원의 귀책사유로 객실의 파손이 있을 시 그 파손액 및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금은 "발주기관" 이용 직원이 제2조에 따른 공급객실 관리 휴양시설(연인산온천리조트, 돌체파르니엔펜션, 라르고빌)에 실비로 정산한다.

5. 공급기간 중 "계약상대자"의 귀책사유로 객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"계약상대자"는 해당 객실 공급가격의 2배를 "발주기관"에게 지불한다. 단,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.

**제7조(계약해지)** "발주기관"과 "계약상대자"는 본 계약내용 위반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, 계약내용 위반 사유 발생 시 그 개선을 권고하며 상대방이 즉시 개선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**제8조(계약의 이행담보)**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사항의 성신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의 총 공급가격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에 대하여 “발주기관”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“이행(계약)보증보험”을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원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“발주기관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손해배상)**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**제10조(불가항력의 면책)**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는 쌍방 간에 어느 일방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, 홍수, 기타 산업혼란, 재앙, 정부법령, 폭동, 반란 등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 그러한 불가항력에 처했을 때, 그 당사자는 즉시 가능한 상세사항과 향후 진전사항을 상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, 원인이 제거된 직후 본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계약의 해석)**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고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하기로 한다.

**제12조(분쟁의 해결)**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되,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"발주기관"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.

### 제13조(신의성실 및 비밀의 유지)

1. "발주기관"과 "계약상대자"는 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,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요청 시에도 상관례에 따라 가능한 협조하기로 한다.
2. "발주기관"과 "계약상대자"는 본 계약에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 등을 상호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.

제14조(계약의 성립 및 효력) 본 계약은 "발주기관"과 "계약상대자"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되고 발효된다.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발주기관”, “계약상대자”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4년 12월 일

임차인(발주기관)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 
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(인)

임대인(계약상대자)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45(대치동, 송산빌딩 2층)  
(주)여행창조 대표이사 이재형(인)